

광주고등법원 2022. 11. 30 선고 2022나218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고,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

변 론 종 결 2022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가합53370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제1심 공동피고 A영농조합법인(이하 ‘A’이라 한다)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A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 66,324,621원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부터 3행의 “가.항”을 “1항”으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5쪽 15행의 “제6호”를 “제1항 제1호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부터 9행의 “737㎡”를 “1,474㎡”로 고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최인규, 판사 김진환, 판사 차기현

## 별지 1

## 목 록

1. 전남 구례군 P 대 593㎡
2. P에 있는 Q
  - [도로명주소] 전라남도 구례군 R
  - 위 지상
  -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사무소 68.1㎡
  - 부속건물
  -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기타조적구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
  - 제조업소 및 주택
  - 1층 제조업소 190.61㎡
  - 2층 주택 93.55㎡
3. S 대 304㎡
4. S
  - [도로명주소] 전남 구례군 T
  - 위 지상
  -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2.4㎡. 끝.

